

부속서 9C
제9장(국경 간 서비스 무역)에 대한 추가적인 약속

해상 서비스에 관한 약속에 대한 주제

다음의 서비스가 제9.2조제1항다호에서 기재된 의무에 의하여 달리 포섭되지 아니하는 경우, 각 당사국은 그러한 서비스가 타방 당사국의 국제해양운송 업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¹⁾

- 가. 도선
- 나. 예선 보조
- 다. 선용품공급, 연료 급유 및 급수
- 라.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처리
- 마. 항만 선석 배정 서비스
- 바. 항행 보조
- 사. 긴급수리시설
- 아. 정박, 그리고
- 자. 그 밖에 통신, 급수 및 전력 공급을 포함하여 선박운항에 필요한 육상운항 서비스

1) 다음의 서비스는 해상운송서비스에 관한 WTO 교섭단에 따라 규명된 바와 같다.